

춘천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나51201 판결 [임차권확인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

변론 종결 2021. 4. 8.

판결 선고 2021. 5. 13.

제 1 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8가단58222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가. 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(각 1/2 지분)사이에, 나.항 토지에

관하여 피고 B 사이에, 다.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사이에 각 2022. 1. 31.까지, 2 별지 목록 2 기재
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사이에 2028. 12.30.까지 각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밑에서 7째줄 "이 법원의 춘천시 E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
회신 결과"를 "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춘천시 E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"로 고치는 외에는
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
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, 판사 송종선, 판사 이은상

별 지

부동산 목록

목록 1

가. 강원도 홍천군		전 2357㎡
나. 강원도 홍천군		전 2480㎡
다. 강원도 홍천군		대 271㎡

목록 2

가. 강원도 홍천군		답 3646㎡
나. 강원도 홍천군		답 1448㎡
다. 강원도 홍천군		전 1530㎡